

【 13 】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운용에관한협약서보고의견

제출연월일 : 2004년 6월 일
제출자 : 양주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열분해용융방식)을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공동으로 설치키로 하고, 위·수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및 책무,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하여 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함

□ 주요골자

- 사업비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갑”과 “을”이 총액의 50%씩 분담하고, 시비는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연차별(3개년) 예산 확보(안제6조)
- 부지 및 시설소유는 “갑”으로 하고, 부지매입비는 “갑”이 부담하며, “갑”은 “을” 지역에 자원회수시설을 신설시 “을”이 부당한 시비중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정산금액을 지급(안제7조)
- 운영비는 “갑”과 “을”이 반입하여 처리한 폐기물량을 비율에 따라 분담(안제8조)

- 주민지원 출연금은 “갑”과 “을”이 사업개시년도부터 3년간 120 억원을 조성하며, “갑”과 “을”은 2003년12월31일 기준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 비율에 따라 출연(안제9조)
-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8인으로 구성하며, “갑”과 “을”이 각각 4인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갑”이 지명하며, 가부동수일경 우 위원장이 결정(안제10조)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 운영에 관한 협약서(案)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양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동두천시장(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갑”과 “을”의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을 원활히 설치 · 운영함에 있어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 2.“자원회수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시설중 열분해 시설을 말한다.
- 3.“사업비”라 함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4.“운영비”라 함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과 유지 · 보수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갑”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 · 운영의 주체로써 처리시설건설의 책임을 지고, 이에 관련된 모든 행정적 · 재정적 절차와 법적절차등 사업시행에 관하여 모든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운영에 공동참여하는 기관으로서 “갑”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협조 및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규모) “갑”과 “을”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자원회수시설은 다음과 같다.

- 1.위치 :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외 6필지 일원
- 2.처리시설 : 자원회수시설(열분해용융방식)
- 3.부지면적 : 44,134m²
- 4.규모 : 100톤/일 2기로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후 최종확정

제5조 (자원회수시설 처리대상 폐기물)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갑”과 “을”的 관할구역안(주둔 한·미 군부대 포함)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로 한정하며, 다만,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과 반입폐기물처리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도 “갑”과 “을”的 합의하에 반입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한정한 폐기물중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및 불연성 폐기물을 혼합하여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의 분담) ①자원회수시설 사업비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공동분담의 원칙에 의해 “갑”과 “을”이 총액의 50%씩 균등 분담한다.

②제1항 중 “을”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사업시행에 따라 “갑”이 요청한 기

간안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협약서 제9조에 대하여도 같다.

③ “갑”과 “을”은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사업비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비 내역 및 사용한 사업비내역을 기재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을 증명 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 (부지 및 시설의 소유) 자원회수시설과 시설부지는 “갑”的 소유로 하며, 토지매입비는 “갑”이 부담한다. 단, “갑”은 “을”지역에 자원회수시설 신설시에는 “을”이 “갑”에게 부담한 시비중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정산금액을 “을”的 자원회수시설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전까지 지급한다.

제8조 (자원회수시설 운영비의 분담)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비는 “갑”과 “을”이 반입하여 처리한 폐기물량을 100분율로 환산한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주민지원기금의 출연) ①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 출연금은 “갑”과 “을”이 사업개시년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120억원을 공동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과 “을”的 출연금은 2003년12월31일 기준으로 “갑”과 “을”的 생활폐기물 발생비율에 따라 각각 출연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의 협의·결정을 위하여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4인을 추천하여 위촉한다.

③운영위원장은 “갑”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의 기능 및 주요사항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 (협약의 변경)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의 파기) ①“갑”的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을”이 투자한 사업비의 전액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수입의 전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협약파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을”이 임의로 이 협약을 파기하게 된 때는 “갑”에 대하여 이미 부담한 사업비등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협약의 파기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파기 당시까지 원인행위가 되지 아니한 사업비만을 청구할 수 있다.